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67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김미애·곽규택·박덕흠

박준대 · 조은희 · 조승환

고동진 · 김성원 · 조경태

주진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

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대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으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 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 2.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	등) ①
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	
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	
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	
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u>중대한</u> 사유가 있는 것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u>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	<u> 대한</u>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	「민법」에
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의
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이 경우 시·도지사</u>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야 한다.</u>
<u><신 설></u>	<u>1. 「민법」 제924조에 따른</u>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u><신 설></u>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
	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u> <신 설></u>	<u>3. 「민법」 제925조에 따른</u>

② ~ ⑤ (생 략)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 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 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 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야 한다.

<신 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② ~ ⑤ (현행과 같음)

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 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 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 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 동
- 2. 「민법」 제924조, 제924조 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 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 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u>④</u> (생 략)

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
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제1항 및 제2항
<u>제3항</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